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5. 31.(화) 16:3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6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23차, 제24차, 제2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22-26-102)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와 <3>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4> 주요내용입니다. <가> 2022년 재허가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9개사 20개 방송국입니다.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도로교통공단 12개 FM방송국, 기존 공동체라디오 7개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재)허가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겠습니다. 기존과 같이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한 제출자료 사전 검증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하고, 지상파방송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 및 임무는 기존 사전 기본계획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라>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배점은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하고 배점(100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부심사 기준 등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 재허가 여부 등 결정 관련입니다.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허가 기간은 차등하여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 추진일정입니다. 6월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까지 시청자 의견 접수와 기술심사 등을 거쳐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후에 12월까지 재허가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동의 의견이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안형환 부위원장

- 원안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셨고,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주)티비씨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2-26-103)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주)티비씨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티비씨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주식회사 티비씨에 대해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재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주)티비씨에 대해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 현황입니다. <가>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주)티비씨의 최대액출자자는 (주)귀뚜라미홀딩스로 (주)티비씨의 지분 28.6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티비씨 대표자는 송경석이고, 최대액출자자 (주)귀뚜라미홀딩스의 대표자도 송경석입니다. <나> 「방송법」 관련 규정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정지 처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에 같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시정명령 및 위반내용입니다. 시정명령입니다. 위원회는 2022년 3월까지 방송전문경영인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재허가 조건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주)티비씨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총괄이사를 선임하고 방송부문 제반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내용의 시정명령 이행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위반내용입니다. (주)티비씨는 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라 대표이사를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가 아닌 총괄이사를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 (주)티비씨의 의견입니다. 첫째, 2019년 재허가 조건은 방송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부관으로 이에 근거한 시정명령 및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는 의견이며, 두 번째 방송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박석현을 방송업무 총괄이사로 선임하고 방송부문 제반 업무에 대하여 위임전결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 前 광주방송 대표이사 조억현, 前 (주)티비씨의 대표이사 김정길은 방송경력도 전무하였음에도

방송전문경영인의 적격 여부가 문제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7>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피심인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첫째, 동 재허가 조건은 최대액출자자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정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티비씨는 방송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조건은 2010년 (주)티비씨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처음 부과가 되었고, 2013년부터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되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누구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2021년 4월 30일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 선임 계획 제출'과 2021년 5월 28일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 선임 계획 보완 제출'을 통해 방송전문경영인을 2020년 3월 말까지 선임하겠다는 약속하였는바 재허가 조건이 불명확하고 방송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 총괄이사를 방송분야 경력자로 선임하여 방송부문 제반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 권한을 주었으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허가 조건 및 시정명령은 방송전문경영인 선임 대상을 '대표이사'로 명확히 지정하고 있어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 타 방송사 선임사례 의견과 관련하여 前 광주방송 조억현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에 광주방송의 부사장을 역임한 후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前 (주)티비씨 대표이사 김정길은 언론학 박사로 신문사 임원, 대구방송 사외이사를 역임한 후 (주)티비씨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재 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 재허가 조건은 2013년부터 부과되어 유지되어 왔고, 피심인이 2021년 4월과 5월에 재허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 선임 계획" 등을 제출하여 재허가 조건의 이행을 약속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재허가 조건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총괄이사를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위임전결 권한을 부여했으므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티비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제재방법은 업무정지 3개월 또는 5,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불편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재수준입니다. 과징금 기준액은 5,000만 원이며, 특별한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기준액 5,0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니까 방송국의 대표이사나 아니면 총괄이사나 차이인 것이지요? 우리 조건은 대표이사를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임명하라는 것이고 (주)티비씨의 주장은 총괄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했으므로 대표이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총괄이사냐, 대표이사냐의 문제가 되겠군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처음에 조건 부과를 했을 때 이것이 법에 저촉된 것이다,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을 때 前 김정길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에 김정길 대표이사가 사임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저희가 김정길 대표이사가 사임한 이후 실무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조건에 대한 체계와 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만약 이 방송사가 5,000만 원을 내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과징금 5,000만 원을 납부하면 이 재허가 조건 불이행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되지만 저희가 매년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면서 (주)티비씨의 모든 방송사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면서 또 다시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올해 5,000만 원을 내더라도 내년에 2022년 이행실적을 보고 역시 그대로이면 또 다시 5,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방송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사전적으로 법률검토를 해 봤을 때 동 건에 대해 다시 행정처분하는 것은 이중 부과가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법률검토 의견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처분은 가능하지만 다시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부과금을 한번 내면 끝입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로서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궁금한 것이 왜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지요? (주)티비씨의 주장이 있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특별히 방송전문경영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일단 (주)티비씨의 입장은 총괄이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방송전문경영인 취지에 맞게 이행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런 주장을 해서 방통위 행정기관이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은 과징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왜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까? 혹시 짐작되는 바가 있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데 계속 총괄이사로 하고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과 총괄이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송전문경영인으로서 충분히 취지를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피심인의 의견을 보면 우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미루어서 소송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부 그런 의견을 실무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다 취한 것이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보완설명드리면 어쨌든 (주)티비씨 쪽에서 2021년 4월 30일

선임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다시 또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2019년도 (주)티비씨의 재허가 조건으로 총괄이사가 아니고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 유지를 부과했습니다. (주)티비씨는 결과적으로 2년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이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자격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행정기관이 봤을 때 그것은 법률적으로나 내용상으로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인데 (주)티비씨가 작년 대표이사 선임 계획을 직접 제출했지요?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한 차례 시정명령까지 내린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주)티비씨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하고 한편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이번 피심인의 의견처럼 방송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총괄이사로 선임해서 시정명령을 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그동안의 사례, 재허가 조건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정확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불편 등을 고려해서 사무처 행정처분 원안인 과징금 5,000만 원 부과에 동의합니다. 다만, 최근 미디어도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송사 역시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방송사 허가나 재허가 조건 부과 시 대표이사를 반드시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효재 위원님도 원안 동의하는 의견이시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대표이사로 방송전문경영인을 선임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유사한 판례가 있었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있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있으면 간단히 소개해 주시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매일방송의 위원회 재승인 조건과 관련해서 행정소송 사례가 있었고, 1심 재판부는 방송전문경영인과 관련한 부관은 허용이 가능하며, 해당 용례가 통상적인 사용 용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처분이 적합하다는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 (2022-26-104)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고시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고시 제·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입니다. 위치정보의

관리적 안전조치 세부기준의 수립 내용으로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위치정보의 수집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치정보의 기술적 안전조치 세부기준 수립 내용입니다. 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인증,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정보 등의 파기방법과 관련하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으로 위치정보 등의 파기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개정안입니다. 위치정보에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의 목적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추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의결해 주시면 6월 초에 고시 제·개정안을 관보 게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동엽 재정팀장**

- 재정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1> 보고사유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하, 분담금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추진경과와 <3> 현행 분담금 산정방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징수를 산정입니다. 기본징수를 개선입니다. 2021년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종편·보도PP의 매출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보도PP의 조정계수를 '1로' 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지상파와 종편·보도PP 모두 2021년과 2018년의 방송사업 매출액을 비교하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중소방송의 경우는 여전히 2018년~2021년의 시장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기간 매출감소율 6.90%를 차감한 조정계수 '0.931'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최종징수를 산정입니다. 먼저 지역·중소방송 감경입니다. 현행 1/3을 일률적으로 감경하고 손실 발생 시 1/2를 감경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 총자본 대비 5%, 0%, 당기순손실 총자본 대비 5%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추가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편·보도PP 감경입니다. 지상파방송과는 달리 유료방송 플랫폼(IPTV·SO·위성 방송) 시청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 2016년~2018년 직접수신 비율(14.23%)을 2019년~2021년 직접수신 비율 기준으로 현실화하여 11.67%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당기순손실 감경입니다. 현재 당기순손실이 총자본 대비 10% 초과인 경우에만 기본징수율의 1/2를 추가 감경하고 있는데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기순손실이 총자본 대비 10% 미만인 사업자에게도 손실에 비례하여 감경하였습니다. <5>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6월 행정예고 및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6월~8월까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겠습니다. 이후 올 8월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붙임>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했으며, 아울러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관련 규정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사업자들 의견을 한번 들었지요?

○ **곽동엽 재정팀장**

- 예, 3번에 걸쳐 들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런데 사업자들 의견 들어본 것을 종합한 것을 보니까 이번에 2021년도에 영업이 나아졌다고

해서 종편·보도PP 조정계수 0.9를 1로 한 것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종편·보도 PP 사업자들은 첫 번째 2021년도에 매출액이 늘어난 것이 일시적일 수 있고, 두 번째는 2021년도 5월 들어서 광고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긴축경영을 생각해야 할 상황에서 작년에 매출액이 늘었다고 해서 기금을 더 걷어간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통위가 이 조정계수를 만드는 기준을 좀 더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봐야 하지 않겠는가, 방송시장에서 가령 광고매출, 광고를 줄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 이것은 너무 거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계시지요?

○ **곽동엽 재정팀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 **곽동엽 재정팀장**

- 이것이 2019년에 분담금을 결정할 때 그 직전 3개년도의 지상파방송사 방송사업 매출차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따르면 작년에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매출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3년 전의 원칙을 적용하되, 올해 말 결산 등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그때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다시 조정계수는 반영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니까 곽 팀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자들의 그 의견을 반영할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 **배중섭 기획조정관**

-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특이하게 올랐지만 그 전 해도 지상파 같은 경우 방송사업매출액이 그 전 해보다는 높아졌고, 종편·보도PP들은 계속해서 방송사업 매출액이 증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올해 조정계수를 1보다 낮추는 것을 고려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사무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런 것이지요. 돈 내라고 해서 기분 좋게 내는 사업자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100개의 사업자가 있으면 100개가 다 조금 덜 내고 싶은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준을 만들 때는 그런 사업자들의 불만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직접수신비율 문제도 그렇고 영업매출액도 그렇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꼭 읽어봤더니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혀 반영할 여지가 없으면, 저는 행정기관이 하는 일이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사업을 잘 하도록 북돋는 일을 해야지, 그 사람들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배중섭 기획조정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안)에 넣지 않았지만 사업자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나왔던 의견에 대해 이번에 다 반영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반영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6월부터 종합적인 제도개선연구반을 만들자고 해서 거기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사업 매출이 작년에 증가했는데 올해 사정이 어려워진 것을 고려하는 문제라든가 종편·보도PP의 수신비율 이런 것들은 현행 시장 환경에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사업매출액이 많이 올랐는데 다른 어려운 점들 또는 앞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다른 요인으로 감경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그런 실적은 좋아졌지만 다른 어려운 측면이라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조금 좀 더 거친 이후에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하여튼 그 사람들은 2019년도에 그런 기준을 만들 때도 반대했고 조금 더 정치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불만이 있으니까 한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중섭 기획조정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조정계수가 1 이상 나오는 것이 계산상으로는 그러는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1로 낮췄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예.

○ 한상혁 위원장

- 필요하면 일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계산해서 방송사업매출액의 증가 추이를 반영했을 때 그대로 계산하면 조정계수가 얼마가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했다는 이야기를 포함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돈 문제는 너무 민감하고 또 정말 잘해야 본전밖에 안 되는데 각 방송사에서 분담금과 관련해서 행정처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 MBC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하는데, 지금 MBC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공영방송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공영방송이 아니라고 해서 정의나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 제도가 20년 넘게 이루어져 오고 있고, 2019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 때문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어떤 해법을 찾지 못했는데 여전히 2022년에 와서도 또 이것이 논란이 되고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제도개선연구반을 운영한다면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계나 학계나 이런 쪽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제는 방안을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MBC의 지위를 제도개선연구반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솔루션 찾기를 고민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서 김창룡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김효재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요, 2019년 8월 23일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그 당시 방통위 위원들이 요구했던 과제가 무엇입니까? 의결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주문했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그 주제가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2019년도에 향후 3년 뒤에 어떠한 과제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연구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 당시 의결 내용이지요?

○ **곽동엽 재정팀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개선요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기본징수율 개선, 그다음에 지역중소방송사의 감경률 조정, 종편·보도PP 감경비율 조정, 당기순손실 감경 형평성 제고, MBC의 자사 감경비율 확대 요구였지요?

○ **곽동엽 재정팀장**

- 예, 다양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래서 2021년 6월~12월까지 해서 6개월간 정책연구하고 결과보고서를 받았지요?

○ **곽동엽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지금 5월이니까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적어도 2019년도에 의결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3년 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된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행정청이 제대로 일을 했다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 **곽동엽 재정팀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런데 그것이 충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배중섭 기획조정관**

- 항상 요구하신 것에 충분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9년 8월에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것과 그 다음에 과제가 있었고 뒷받침하는 결과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가 됐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중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안 된 것, 접근조차 못한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MBC가 공영방송이므로 KBS·EBS와 동일하게 방송운영의 공공성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징수율의 1/3을 감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방통위원 한 분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라”라고 당시 2019년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곽동엽 재정팀장**

- 3년 만에 제도개선을 위해 작년에 정책연구를 발주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MBC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곽동엽 재정팀장**

- 거기에 보면 정책연구를 하면서 MBC 측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특정 방송사 감경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KBS·EBS 감경을 폐지하거나 방송 운영의 공공성을 근거로 모든 방송사에 감경을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방송사를 감경하기 위한 방안은 방송평가 점수 높낮이를 통해 방송사에 감경 혜택을 주거나 또는 재허가 점수를 주거나 이런 방안이 있는데 정책연구에서는 어느 것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쫓았습니다.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MBC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의결할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고시 개정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작년에 정책연구를 통해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로는 MBC에 대한 단독적인 공영성으로서의 개정보다는 다른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정책개선 감경을 폐지한다거나 또는 모든 방송사에게 전부 다 감경해 주는 안들을 제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2019년도에 제도를 개선하고 처음 분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시 손대기보다는 기존 틀을 유지한 채 최소한의 것만을 이번 정책개선에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MBC에 대해서 사업자 이야기를 3차례에 걸쳐 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곽동엽 재정팀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MBC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KBS, MBC, EBS는 공영 미디어법인 KOBACO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정하여 방송할 수 있고, 그리하여 2013년 헌법재판소는 MBC의 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위헌 청구에 대해 MBC를 공영방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상 MBC는 중앙선거방송토론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KBS와 함께 공영방송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KBS와 EBS는 수신료를 받고 있음에도 대외방송, 방송 인프라,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방발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MBC는 공영방송사 중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도 지원금이 전혀 없는 비합리적 비형평성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3차례에 걸쳐 했고, 2019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곽동엽 재정팀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KOBACO와 MBC의 관계, 그러니까 방송광고를 가지고 방발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복잡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MBC가 광고와 관련해서 KOBACO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하므로 공영방송이다”라고 2013년도에 판시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상위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9년도 방통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정책연구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공영방송인 MBC에 대한 감경 요구가 있다는 것이 적시되어 있고, 고시 개선(안)에는 지상파방송,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최대 1/3을 감경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지상파방송에 MBC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2019년도, 2021년도 상당기간 동안 MBC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제 또 연구반을 통해서 검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의 지위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리겠다, 이것이 사무처의 입장인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지요?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위원님, 조금 전에 인용하신 헌법재판소 판결은 2013년도 판결입니다. 2019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감경 여부를 고려할 때 그런 논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있지만 KBS·EBS가 정부 전액 출자인 점 등을 고려해서 또 새로운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감경하지 않겠다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로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상황...

○ 김 현 상임위원

- 어느 위원회에서 의결로 밝혔다는 것입니까?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무엇을 밝혔습니까?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죄송합니다. 밝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연구를 토대로 2019년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그런 새로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2019년 8월 방통위에서 의결하면서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그것의 결과물이 2021년 6월~12월까지 6개월 동안 제도개선반이 운영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MBC가 공영방송인 바 감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점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런데 이번 5월에 해서 6월에 행정예고하고 기재부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에 의결해서 고시를 시행하는 데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고시 변경(안)은 현재로서는 원안에 찬성하는 분이 세 분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언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냐? 그러면 시계를 다시 돌려서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이 2021년도에 연구반을 통해 나왔는데 다시 2022년도 8월에 위원회 의결하고 고시 시행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된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고, 또 MBC에 대한 지위 문제를 이 단위가 아닌 다른 단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논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 검토해 주십시오. 방송광고로 집행되는 방발기금에 대해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낼 수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 **곽동엽 재정팀장**

- 그것이 다음 달부터 연구반을 구성해서 OTT 분담금 부과 여부나 대형PP 분담금 여부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2021년 6월~12월까지 그 연구반에서 연구 하라는 것이 2019년도 8월 의결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작년 연구결과에서도 2019년도에 논의했던 것과 똑같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성격은 있을 수 있지만 2019년도에 이리이러한 것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달라지기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방송사들에게 감경을 허용해 준다는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MBC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셨고, 제가 여쭙본 것은 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준비할 것 아닙니까?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이해당사자인 MBC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낸 것이고, 학계에서도 가부간 찬반 여론이 있을 것이고, 방통위 안에서는 MBC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단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지에 대해 지금 답을 주지 마시고, 어차피 연구반에서 하겠다는 것도 이미 연구반에서 하라고 했는데 안 된 것이고 또 다음에 연구반에서 논의한다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 계획서에는 6월부터 연구반을 가동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예.

○ **김 현 상임위원**

- 이것은 꼭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놓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곽동엽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리고 지적됐던 종편과 보도PP에 대한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MBC에 대한 문제는 방통위가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배중섭 기획조정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어디에 자꾸 미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에게 우리가 적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청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가 됐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MBC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안에는 부동의합니다.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사무처에서 어떤 의향만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변 학계의 연구 또는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일정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될 때 저절로 제도 개선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사무처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제도개선 여건이 성숙된다면 그런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효재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 8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시가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자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들어보자는 것을 포함해서 오늘 이 보고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일단 접수해야지요.

○ 한상혁 위원장

- 접수하고 그 의견수렴은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 절차니까 진행한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원안 접수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대부분의 방송사업자들이 분담하고 있으며, 그동안 징수대상과 징수율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이에 대한 대상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번 개정안 역시 대상 방송사업자들이 자사 입장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사무처에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불가피하게 방송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큰 변화 없이 나름의 합리적 개정안을 한 것인 만큼 대상 방송사업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서 계속 제도개선연구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제도개선 문제는 방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OTT를 분류해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방송 시스템 전체와도 맞물린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조속히 발족시켜서 심도 있게, 일단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해서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처 원안 보고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역시 다수 의견이 원안대로 접수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 접수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사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요구들은 충분히 듣고, 그 의견들을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 나름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보고내용은 원안대로 접수되더라도 2022년 8월에 최종적으로 고시를 의결하고 시행하기 전까지 좀 더 충분히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그런 청취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엽 재정팀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 접수되었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6월 8일에 개최하되, 시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7시 19분 폐회 】